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함(안 제17조의4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